

「2026 물산업 선도기업 해외마케팅 지원」  
운영 용역 과업지시서

# I 과업개요

- 과업명: 2026 물산업 선도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운영 용역
- 과업량: 8개사 정도
- 과업목적: 물산업 성장 유망국에서 개최하는 해외 전시 참가를 통해 국내 물산업 선도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 제공
- 과업기간: 계약일 ~ 2026. 12. 31까지
- 전시개요

## < 전시개요 >

- 전시명 : 독일 뮌헨 환경 전시회, IFAT 2026
- 장소 : 독일 뮌헨 컨벤션 센터(Trade Fair Center Messe Munchen)
- 기간 : 2026. 5. 4.(월) ~ 5. 7.(목)
- 분야 : 에너지 및 자원 관리, 환경 모니터링, 폐기물 및 재활용, 하수 처리 기술 등
- 규모 : 300,000sqm, 142,000명 이상 참여 예상
- 위상 : 전 세계 환경·자원 산업의 기술 표준과 시장 흐름을 규정하는 최상위급 글로벌 전시회로, 기술 성숙도·국제 바이어 밀도·정책 연계성에서 독보적이라 평가됨

## 과업개요

구분	과업내용
사전 운영 관리	- 전체 운영 일정표 등 기획 및 계획 수립 - 참가기업 대상 안내자료 제작 등
부스설치 등	- 전시회 현장 부스 시공 및 설치, 부스간판 및 벽면, 카펫, 안내데스크, 상담테이블, 의자 등 부대시설 설치
통역원 섭외 및 교육	- 전문 통역원 섭외, 참가기업 사전 매칭 및 교육, 현장 관리 등
물류 운송 지원	- 참가기업 전시물 및 홍보물의 국내 → 전시회 현장 편도 운송 지원 등
현지운영	- 전시회 현지 파견을 위한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 운영 전반 지원 - 파견 기간 전체 공항, 숙소, 기타 목적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가이드 지원 - 현지 사전 세미나, 물산업 관련 유관기관·기업 방문 등 현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사후관리	- 참가기업 상담 실적 관리, 만족도 조사 등 - 전시회 참가 실적 및 현지 시장 분석 보고 자료 제작 등(완료보고 1회, 사후관리 보고 2회)

□ **입찰방법**

- 업체선정 : 1개사(공동수급 불가)
- 입찰방식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□ **용역예산** : 금100,000,000원 정도(부가세포함)

## II **과업내용**

---

□ **사전 운영 관리**

- 전체 파견 운영 일정 기획 및 계획 수립
- 참여기업 대상 사전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
- 운영 매뉴얼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

□ **전시 부스 시공·설치 및 현장 운영 관리**

- 참가 규모 및 기업 수에 따른 부스 구성 계획 수립
- 부스 콘셉트, 동선, 상담 공간 배치 계획 수립
- 전시회 주최사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부스 구조물 시공 및 설치
- 부스 간판, 벽면 그래픽, 출력물 제작·설치
- 바닥 카펫 시공, 안내데스크, 상담테이블, 의자 등 집기 설치
- 전기, 조명, 전원 멀티탭, 기본 통신 환경 구축
- 전시 기간 중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시설 관련 민원 및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

□ **통역원 섭외·교육·운영 관리**

- 통역원 전시·산업 분야 경력 검증을 통한 전시회 성격에 적합한 전문 통역원 섭외 및 참가 기업별 통역원 매칭
- 기업·제품·기술자료 기반 사전 교육 실시 및 필요시 기업 미팅 지원
- 통역 품질 관리 및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교체·추가 투입 등 대응 체계 마련

□ **물류 운송 및 전시물 관리 지원**

- 참가기업 국내 → 전시회 현장 편도 물류 운송 지원
- 통관 및 현지 반입 절차 관리 및 대응
- 현지 추가 물류 발생 시 조정 지원 등

□ 현지 운영 지원

- 파견 인원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등 전반 운영 관리
- 파견 일정 전체 용이한 이동과 운영을 위한 차량, 식사, 가이드 지원 등
- 전시회 연계 사전 또는 부대 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
- 필요시 물산업 관련 현지 기관 또는 기업 방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

□ 기타사항

- 기타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시행

□ 사후 관리 및 성과 분석

- 참가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상담 건수, 바이어 반응 등 성과 지표 수집
- 현지 전시회 운영 관련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제안 내용 등을 담은 성과 분석 보고 자료 제작 등
- 시기별 보고자료 제출

종류	시기	내용
사업수행계획서 (착수 보고서)	계약 후 7일 이내	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, 인력별 담당업무, 세부계획서, 사업비 소요명세서 등
완료보고서	운영완료 후 15일 이내	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
사후관리보고서	운영 완료 후 6개월, 1년 시점(2회)	사후 추가 상담, 수출 계약 건 등 조사 후 보고

### Ⅲ 사업수행

□ 사업수행 조건

- 모든 업무는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,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.
- 운영관리 계약종료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 운영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계약기간 종료 후 제 3자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및 성과물(산출물)을 제공해야 한다.

## □ 과업수행원칙

-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(이하 “발주자” 라 한다)의 내부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-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동 과업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,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동 자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은 각종 관련 법규의 규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## □ 적용기준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.

## □ 참여인력의 교체

-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자의 요구로 교체될 시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 □ 용역감독의 제반업무

- 발주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하기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·감독할 권한을 지니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참여인력 동원 현황

- 업무수행 상태
- 기타 과업수행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
-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.

#### □ 보안 및 비밀유지
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, 보안사항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, 도의적 책임을 진다.
-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사항 또는 용역과 관련한 사항의 공표 및 발표 시에는 사전 상호협의를 요하며 누설을 금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였거나 본 용역을 통하여 획득한 각종 자료를 전부 반납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보류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상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판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#### □ 용역대가의 지급

- 과업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후 사후 원가검토에 따라 발주자가 검수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 지급을 청구한다.
- 대가지급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진도를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에 의거 지급한다.
  - 1) 계약상대자는 용역 청구서를 용역검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한다.
  - 2)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상기 용역비를 10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한다.
  - 3) 계약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,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

금액을 고의로 불성실하게 전용하는 경우, 발주자의 재량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용역대가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
- 4)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 발주자가 용역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거절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□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등
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과업상의 이행 의무 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, 발주자 또한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는 본 과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-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·생산된 자료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며, 계약상대자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 자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계약해지시 기 지불된 대금 및 관련 행정처리는 관련 법률 또는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.

#### □ 계약의 변경 및 해지

- 용역계약일반조건(계약예규) 제15조, 제16조, 제17조 및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발주자에 의하여 용역계획 및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
  -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  - 계약내용에 따른 예산 변경시
  -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-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

아니 한 경우

-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-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부정 및 법률 저촉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-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, 관할법원은 진흥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#### □ 지적재산권 및 비밀유지

-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 산출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 (이하 “지적재산권 등”)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, 계약상대자는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당해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거나, ②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을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이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, ③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으며, 사업 완료 즉시 진흥원에 납품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본 지적재산권 침해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.  
끝.